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0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 검토의견:	3
1.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3
2.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방식 등 변경	9
3.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13
4.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 해임요청권 신설	18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나. 제안일 : 2024. 12. 11.

다. 회부일 : 2024. 12.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일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의 직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

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 (생략) ② 관장은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국회의장이 <u>각 교섭단체 대표의원</u> 과 협의하여 지명한 <u>국회의원</u> 4명 4. (생략) ④·⑤ (생략) <u><신설></u>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u> ----- ----- -----.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u>지명하는 민간 전문가</u>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u>

	<u>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u> <u>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한다.</u> <u>③ 독립기념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④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u> <u>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

공기관운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됨.

- 동 조항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면서, 당시 준정부기관이었던 독립기념관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임원 임면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음.
- 공공기관운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기관의 비상임이사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게 하여야 함.¹⁾

-
- 1)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⑦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 한편, 독립기념관은 2023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법에서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무원(교원 제외)과 독립기념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이는 기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던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주무기관인 국가보훈부 소속의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차이가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독립기념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구분	현행	개정안
규정	공공기관운영법	독립기념관법
위원 수	5명~15명 범위(이사회가 결정)	미정
위원장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구성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단, 이사회 선임 위원은 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미만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단, 이사회 선임 위원은 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미만
위원 결격	공무원, 기관 임직원 *단, 주무기관 공무원, 교원,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가능	공무원, 기관 임직원 *단, 교원은 가능

- 독립기념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

통령이 임명하는 관장 1명,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8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자의 전문성·공공성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되므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임원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²⁾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기관의 임원 선임에 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주무부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보자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지 여부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기관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인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고,

○ 독립기념관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 취지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인데,³⁾ 기관 비상임이사와 주무부처 공무원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면, 위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됨.

3)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 1. 30.

- 한편, 개정안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도,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어, 두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⁵⁾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의 비교할 때, 독립기념관 이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외 다른 위원들의 구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흠결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⁶⁾

4) 개정안이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면, 안 제7조의2제4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공공기관운영법은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제29조제6항).

5) 그 밖에, 독립기념관은 2023년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 지정되었음에도,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독립기념관의 임원 임명절차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독립기념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공공기관운영법과 다르게 구성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와 충돌되는 공공기관운영법령상 내용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6) 독립기념관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임명절차 적용이 제외되고, 개별법 및 정관의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2.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 방식 변경 등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이사 중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는 인원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 (생략) ②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국회의원 4명 4. (생략) ④·⑤ (생략)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 -----.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명하는 민간 전문가-----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중 4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국회의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2] 독립기념관 이사회 구성 현황

직 위		임 기	인 원	임 명 방 식
상임이사 (1인)	이사회 의장 (독립기념관장)	3년	1명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복수 추천 → 국가보훈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비상임이사 (14인)	광복회장	재임기간	1명	당연직
	국가보훈부 보훈선양 담당 국장	재임기간	1명	당연직
	국회의원	2년	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지명
	임명직	2년	8명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복수 추천 → 국가보훈부장관 임명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지명할 수 있는 대상을 “국회의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 지명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이사회를 통하여 독립기념관의 운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독립기념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회의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지명할 수 있는 대상을 “국회의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회 또는 국회의장이 추천·지명하는 국회의원을 기관의 위원 또는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통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경영에 국민의 의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지명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

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독립기념관 임원 구성에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운영의 중립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22년 개정으로 도입한 것임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표 4] 국회의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 등 현황

구분	공직	위원자격 (임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국회의장 지명 (10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6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의원 (3년)	×
	독립기념관 이사(4명) (독립기념관법 제7조)	국회의원 (2년)	○
국회의장 추천 (34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3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문가 (3년)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10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가 (2년)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3명)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문가 (3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3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전문가 (2년)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3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가 (2년)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3명) (사립학교법 제24조의3)	전문가 (2년)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4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전문가 (2년)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2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	전문가 (3년)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3명)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	전문가 (2년)	×

*법문언에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국회의안편람 해설편」(2024. 7.), p.338 일부 발췌

7) < 독립기념관 임원에 관한 개정 연혁 >

舊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개정이유
제7조 (임원)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제7조 (임원)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토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그 밖에,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되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은 “국회의장이 지명한”으로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장의 지명 대상을 “민간 전문가”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격 또는 전문 분야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⁸⁾를 참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대상을 국회의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되,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방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⁹⁾

[표 4] 국가보훈부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7조(임원)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민간 전문가 4명	제7조(임원)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회의장이 <u>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u> 지명하는 민간 전문가 4명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원)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9) 독립기념관도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3.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6항¹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항제1호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u><신 설></u>	<u>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u>
<u>1. (생 략)</u>	<u>2. (현행 제1호와 같음)</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3. -----</u> ----- -----또는 제36조제2항 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0)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종전(2009. 1. 7. 법률 제9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독립기념관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우선 적용¹¹⁾하도록 한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2007. 1. 19.)되어, 동법의 규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운영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면서 삭제하게 된 것임.

[표 5] 독립기념관 임원 결격사유 변화

舊 독립기념관법 (2009. 1. 7. 개정 전)	독립기념관법	舊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당시)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한편, 결격사유 중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에 따른 법 정비 과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개정 당시 동 결격사유는 “공기

11)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적용 대상 등)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해임된 경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이동(제48조제6항에서 제48조제8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¹²⁾

[표 6]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임원 해임 규정 변화

舊 공공기관운영법 (2008. 12. 31. 개정 전)	공공기관운영법	비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결격사유)
(제48조 제6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제48조 제4항) 연차별 보고서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불공정한 인사경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청하고, 감사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임 건의 (제48조 제8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u>제48조제4항·제8항</u>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에서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12) 반면, 독립기념관 정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 「독립기념관 정관」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 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는 특정인이 해당 신분이나 자격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를 신설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 대상 신분의 특수성 및 결격사유와 제한하려는 신분과의 합리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독립기념관의 설립취지 및 독립기념관 임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독립기념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독립기념관의 임원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독립기념관 임원이라는 신분의 특성과 결격사유 간에는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과거 같은 내용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었고, 동 결격사유가 삭제된 것이 다른 취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공공기관운영법의 내용과 통일을 위한 정비 목적이었던 것이라는 점, 독립기념관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일한 내용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³⁾

□ 다만, 경영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준정부기관의 임원에서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독립기념관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및 해임된 임원의 재취업 제한을 통하여 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있음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그 밖에, 안 제10조제1항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현행법 제10조제1항 본문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독립기념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6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14) 동 결격사유를 준치시키려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6항”을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8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4.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요청권 신설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해임요청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u> <u>1.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u> <u>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립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u> <u>3.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임명권자에게 독립기념관 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독립기념관 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여 관장의 직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독립기념관 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주무기관의 장인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그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⁵⁾ 독립기념관은 2023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기 전까지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상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고,¹⁶⁾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15)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6) 공공기관운영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포함한 임원의 신분과 임기가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¹⁷⁾ 해임요청권의 신중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⁸⁾

□ 그 밖에,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동 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등의 관련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7] 체계·자구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10조의2(<u>해임요청</u>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u>독립기념관장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u>독립기념관장의</u> 해임을 <u>요청</u>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u>하</u> 는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립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u>해임건의</u>) 국가보훈부장관은 <u>관장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u>관장의</u> 해임을 <u>건의</u>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u>한</u>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립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⑥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독립기념관법」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8) 예컨대,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또는 제35조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게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사회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청을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이 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